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933 발의연월일: 2024. 11. 27.

발 의 자: 조은희 · 이성권 · 서일준

이만희 • 김기현 • 박성훈

김용태 • 주호영 • 신동욱

윤상현 · 조배숙 · 한기호

박정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,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기소 전 몰수·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 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·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8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·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6조(비밀유지) ① 세무공무원	제86조(비밀유지) ①		
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			
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			
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			
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			
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			
등(이하 "과세정보"라 한다)을			
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			
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			
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
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			
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			
제공할 수 있다.			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10.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		
	<u>· 추정보전명령을 신청하기</u>		
	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		
	<u>경우</u>		
<u>10.</u> (생 략)	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		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	